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 검토보고서

2024. 11. 26.(화)

검토안건	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영숙 의원 외 8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 1. 제안경위

- 제안자 : 권영숙 의원 외 8명
- 제안일 : 2024. 11. 15.
- 회부일 : 2024. 11. 18. (의안번호 : 24-136)

## 2. 제안이유

- 마포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입법예고 : 2024. 10. 18.~10. 24.(제출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2023년도 한국장애인 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지비용(23.5%)부분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장애인 재단과 기업이 참여하는 ‘드림카 프로젝트’ 사업은 수혜 대상이 연평균 40대 정도로 매우 적은 실정임.

- 우리구 현황을 보면 2024. 9. 현재 등록장애인은 12,450 명이며 이중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발급 차량은 4,767대로 약 38%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본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 점검에 소홀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 점검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 이상 유무 점검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차량사고를 예방하고 점검을 받은 경비를 일부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종합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및 같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로 장애인이 이동할 때 자동차의 구조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받아 자동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 편의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50%~60%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취지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신청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자동차전문 정비사업 마포구지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장애인 사회보장	신희선 (8880)	이민영 (88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지원내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강나은
연 락 처	02-3153-8873

## 참고 자료

### 1.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9.>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마포구 장애인 현황 (2024. 9. 기준)

계	심한	심하지 않은
12,450명	4,698명	7,752명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발급 차량 : 4,767대 (장애별 구분 자료 없음)

## 3.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제도

지원주체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국교통공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공단검사소 방문 필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심한 장애 : 50% 심하지 않은 장애 : 30%